

목재포장재 검역규제 현황 및 수출검역 요령

남봉우 / 국립식물검역소 방제과

I. 검역규제 현황 및 전망

1. 목재포장재 검역 실시 배경

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통상적으로 식물검역 대상이 아니지만 가공이나 소독 처리를 하지 않은 생목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래 병해충이 함께 묻어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 품목이다.

이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검역 선진국 가에서는 일찍부터 목재포장재를 식물검역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된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 MB 훈증 등의 소독 처리를 요구해 왔다.

또한, EU·미국·캐나다·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목재포장재를 통해서 소나무재선충이나 유리알락하늘소와 같은 중요한 병해충이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동 병해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산 목재포장재에 대해 검역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2. 목재포장재 검역 국제기준 제정

목재포장재를 통한 병해충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개별적으로 검역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목재포장재를 검역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FAO 산하의 식물검역관련 국제기구인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목재포장재의 검역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어, 2002년 3월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

3. IPPC 국제기준(안)의 주요 내용

3-1. 규제 적용 대상

침엽수 목재포장재와 비-침엽수 생목재 목재포장재(짐깔개 포함)를 규제적용 대상으로 하며 가공된 목재로 제작된 포장재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가공된 목재는 접착제·열·압착 등의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 병해충이 제거·사멸된 목재로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등의 목재를 말한다.

3-2.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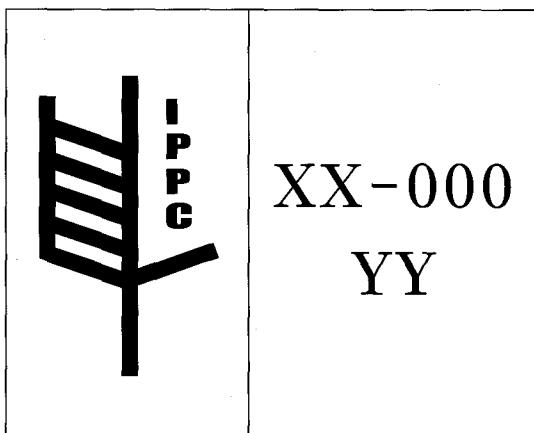
목재 중심부의 온도 56°C에서 30분간 열처리나 MB 훈증 중 한 가지의 소독처리를 실시하고 포장재에 [그림 1]의 증명마크 표시해야 한다.

[표 1] 목재포장재 열처리

온도	약량	최소농도(g/m ³)			
		30분	2시간	4시간	16시간
21°C 이상	48	36	24	17	14
16°C 이상	56	42	28	20	17
11°C 이상	64	48	32	22	19

※ 처리기간 중 10°C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됨.

[그림 1] 보통 캐리어 카톤



XX : ISO의 2자리 국가코드

000 : 식물검역기관이 부여한 고유번호

YY : 적용된 조치에 대한 약어

(HT 또는 MB)

3-3. 불이행시 조치

소독, 폐기(소각, 매립, 가공 등) 또는 반입금지 조치는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식이 없을 경우나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식이 있지만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4. 국가별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4-1. 중국

- 1) 2002년 2월 20일부터 적용된다.
- 2) 침엽수 목재포장재 : 열처리(목재중심부 온도 56°C, 30분 이상) 후 식물위생증명서에 열처리 사항 부기
- 3) 비침엽수 목재포장재 : 화주가 「비침엽수 목재포장재 사용증명서」작성 제출
- 4) 비목재포장재 : 화주가 「목재포장재 무사용증명서」작성 제출

4-2. 미국

- 1) 우리나라 목재포장재에 대한 현행 규정
 - ① 수피가 없어야 함
 - ② 도착지 검역에서 수피,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소독 조치
- 2) 미국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안)
 - ① 대상 : 짐깔개, 파렛트, 나무상자 등 미가공 목재포장재
 - ② 수입요건 : 국제기준(ISPM No. 15)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열처리, MB 훈증) 처리되어야 하며, 소독처리마크가 포장재에 찍혀야 함
 - ③ 불이행시 조치 : 반송
 - *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는 현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규정 마련 중에 있음

목재포장재 검역규제 현황 및 수출검역 요령

(시행 예정일 : 2004년 4월 ~ 5월로 조정 중)

④ 수입자들에게는 ISPM No. 15와 미국의 입안예고에서 규정한 목재포장재 요건에 부합되도록 수입할 것을 권고한다.

⑤ APHIS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현행의 요건을 준수할 것이다.

4-3. 캐나다

1) 규정 발효일자 : 2004년 1월 2일

2) 규제대상 물품 : 짐깔개, 파렛트, 나무상자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가공 목재포장재

3) 수입요건 : 국제기준(ISPM No. 15)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열처리, MB 훈증) 처리되어야 하며,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이 승인한 공식적인 마크 또는 로고가 각각의 포장재에 찍혀야 한다.

4) 불이행시 조치 : 반송

5) 캐나다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시행일인 2004년 1월 2일은 캐나다 도착일 기준이며 유예기간을 둘 예정임

6) 유예기간 : NAPPO 회원국에서 준비되는 대로 전면적인 시행을 공고할 예정이다.

① 유예기간 중 : 요건 미부합 화물은 캐나다 내에서 소독처리(열처리, KD 처리, MB 훈증처리) 및 폐기 허용

② 유예기간 경과 후 : 요건 미부합 화물은 반송조치

4-4. 뉴질랜드

1) 수피가 없어야 함

2) 다음중 한가지로 소독하고 식물위생증명서나 소독증명서에 소독처리사실 기재

① MB/ Sulphuryl fluoride 훈증 : 80g/m³, 24시간, 10°C 이상

② 인화늄(PH3)훈증 : 1.41g/m³, 72시간, 10~30°C

③ 목재 두께가 50mm 이하, 함수율 25% 이하

④ 화학적 방부처리 : 뉴질랜드 Biosecurity 인정 방부처리

⑤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70°C, 4시간

3) ISPM No. 15에 규정된 소독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마크 표시

4-5. 호주

1) 수피가 없어야 함

2) 다음중 한가지를 실시하고 식물위생증명서나 소독증명서에 소독처리사실 기재(소독처리는 선적 21일전에 실시해야 함)

① MB 훈증 : 상압 21°C에서 48g/m³을 24시간 처리, 온도가 21°C에서 5°C 증/감 시 약량 8g/m³을 감/증

② 화학적 방부처리 : 호주 AQIS가 승인한 방부처리 방법

③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56°C에서 30분간 처리, 식물위생증명서에 처리시간, 온도, 목재두께를 기재

4-6. EU

1) 수피가 제거되어야 함

2) 수염하늘소속(유럽에 없는 종에 한함)에 의한 식해공(직경이 3mm 이상인 것)이 없어야 한다.

3) 재조 시점에 건물중에 대한 수분함량이 20% 이하이여야 한다.



5. 전망

현재까지는 국가별 검역요건이 상이하나, 세계의 각국이 국제기준(ISPM No. 15)에 따라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 요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검역요령

1. 제정사유

목재포장재를 통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 및 사례의 증가로 세계 각국에서는 포장재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제4차 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ICPM) 회의에서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 지침”이 지난 2002년 채택됐다.

국제기준(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 지침”에서는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소독처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소독처리 및 소독처리증명에 대한 절차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할 수 있는 규정인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규정”을 대신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열처리 및 MB 훈증)업체의 지정·관리, 소독처리 및 소독처리증명에 대한 규정인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제정했다.

국제기준에 맞는 소독처리 및 증명절차가 없을 경우, 수입국은 우리나라 수출 화물에 사용되

는 목재포장재가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요건에 맞지 않는다 하여 우리나라가 수출한 화물에 대하여 검역처분(소독, 폐기, 반송 등)을 하게 됨으로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2-1. 목재포장재 수출검사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 소독은 수입국 검역요건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 훈증 소독하고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찍어 수출하거나, 식물검역소에 수출식물검사 신청해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소독처리업체가 발행한 소독작업결과서 확인으로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및 소독처리 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소독처리사항이 부기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2-2.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목재포장재 소독은 열처리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한다.

- 1) 열처리업자 : 식물검역소장으로부터 ‘열처리시설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 2) 수출입식물방제업자 : 농약관리법 제3조의 2 규정에 의해 식물검역소장에게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2-3. 소독처리업체 지도 관리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이 소독처리업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한다.

소독처리업자는 신고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소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

- ① 소독처리업체 기준에 미달된 경우
- ② 소독처리마크의 신고, 작업일지 기록보관 등 소독처리업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독처리하거나 소독증명을 한 경우에는 소독작업결과서 발급 및 소독처리마크 사용을 중단 조치하도록 한다.

[표 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증명 절차

